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30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상혁·한준호·김주영

박희승 • 한민수 • 홍기원

정일영 · 이정문 · 김용만

허 영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대상조합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3개에서 24년 161개로 약 12배 증가하였는데,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상임인 감사를 의무로 선임하여 조합에 상임임원을 2~3명 두도록 하는 만큼,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협과 새마을 금고는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시행될 예정이며, 수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타 상호금 융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 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항 전단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임원) ① ~ ⑦ (생 략) | 제27조(임원) ① ~ ⑦ (현행과 |
| | 같음) |
| ⑧ <u>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u> 대 | ⑧ <u>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u>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 | 3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
| 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 |
| <u>두어야 한다</u> . 이 경우 상임감사 | 두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
| 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
| |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
| | 있다. |
| | |
| ⑨ ~ ③ (생 략) | ⑨ ~ ⑴ (현행과 같음) |